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근로 용어 일괄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6월 12일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0년 6월 3일

나. 제 안 자: 윤유선 의원 외 8명

다. 회부일자: 2020년 6월 10일

라. 상정일자: 제27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4차 회의 상정·의결(2020. 6. 12.)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윤유선 의원)

□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상에 사용 중인 “근로” 용어를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를 의미하는 “노동”이라는 용어로 일괄 정비하여 노동의 가치 존중과 노동자 권익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일괄 개정함(「서울특별시 강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등 10개 조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　　의 : 기획예산과, 가족정책과, 감사담당관, 일자리정책과, 장애인복지과, 지역경제과, 협치분권과

라. 입법예고(2020. 6. 5. ~ 6. 9.) 결과: 의견 없음

4.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배금택)

○ 본 일괄개정 조례안은 근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10건의 조례에 대해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개정함으로써 노동의 가치와 자발성을 존중하고자 함

○ 근로와 노동에 대한 의미와 차이를 살펴보면

- 「근로기준법」 상으로는 근로를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으로 정의하고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음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을 의미하고, '근로자'는 '근로에 의 한 소득으로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 또는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라 하고, '노동자'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얻은 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이라고 정의되어 있음

○ 검토결과 근로기준법 상으로는 두 단어는 큰 의미 차이 없이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 전반적인 사회통념상 근로가 종속적, 수동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노동이 자발적, 주체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해석됨에 따라, 근로를 노동으로 개정함으로써 노동의 가치가 강조되고, 노동자에 대해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일괄개정조례안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음

○ 다만 현행 헌법과 여러 법률이 노동이 아닌 근로로 정의되거나 표기하고 있어 법령의 조문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근로를 노동으로 바꿔도 법령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조례만 우선 정비하였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생략

7. 심사결과: 원안가결

※ 붙임 관계 법령 1부

참 고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